



제410회 국회 (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표명령 세부 내용 법률로 상향〉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702호)

2023.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3
1. 공포명령 세부 내용 법률로 상향	3
IV.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2023년 9월 26일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3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의 종류나 성능 등 기준·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에게 지체 없이 위반 사실의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영업자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표명령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공표명령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벌칙과 관련한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관한 의무와 공표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먹는샘물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먹는샘물등의 제품에 기재된 업체명과 제조업체가 다른 사례가 많음. 또한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소위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가 제조사와 제품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임.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 명칭’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업자가 공표를 하더라도 포함해야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공표명령 세부 내용 법률로 상향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공표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표해야 할 위반사항 중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6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6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u><신설></u> ③ (생략)	<u>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7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공표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위반 또는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의 성능·제조방법·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압류나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¹⁾, 그 명령받은 사실을 해당 업자가 공표하도록 규정하

1) 「먹는물관리법」 제47조(폐기처분 등) ①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36조제3항이나 제40조제1항에 위반되는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 등에게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 있음²⁾).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³⁾ 명령대상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품명·사업장소재지·위반내용·위반제품의 제조일 등 공표 내용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 제47조의2에 따른 공표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품의 압류나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제재적 성격의 공표에 해당하는바, 기타 제재적 처분과 마찬가지로 제재적 공표에 대해서는 사전 권리 구제절차로서의 의견진술·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2)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공표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반내용을 나타내는 표제
2. 해당 제품명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명칭
3. 사업장 소재지
4. 위반내용(위반정도를 알 수 있도록 법령상의 기준과 대비하여야 한다)
5. 위반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일 및 유통기한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명령을 내리기 전에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공표명령을 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항, 공표 내용 등을 시행령이 아닌 개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업자가 현행법 제47조의2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⁴⁾, 제품명·위반내용 등 공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공표명령의 이행력 제고 및 먹는샘물·정수기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공표명령의 내용, 의견제출 기회 등 사전 구제절차 등 공표명령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표해야 할 위반사항 중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인정됨.

다만,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 제61조와 관련하여, 공표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표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47조의2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⁵⁾, 「건설

4) 「먹는물관리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8.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⁶⁾, 「수도법」⁷⁾ 등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통상 법률에서는 제도의 정의, 제도에 따른 의무 등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 등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상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546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수도법」 제14조의6(제품 등의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1: 행정처분 후 '제품명'을 누락하여 공표한 사례(환경부제공자료)

000 공고 제2019-1312호(홈페이지 공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00도



0 0 도

NEXT경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주)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우리 도내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홈페이지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사항		처분내역	
			위반일	위반내용	처분일	처분명
(주)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순옥길 256	먹는샘물 제조업	2018. 4. 4.	제품수 수질기준 초과 (법 제5조 3항)	2018. 4. 28. ~2018. 5. 27	영업정지 30일

끝.

※ 참고자료2: 먹는물관리법 과태료 처분 기준(환경부제공자료)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먹는물관리법영업자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공통사항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7호	50	70	100
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80	90	100

	제10호			
2) 먹는샘물등 및 수처리제의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6호	50	70	100
3) 정수기 제조업자				
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5호	50	70	100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1조제2항 제6호	50	70	100
다)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 제2호	150	230	300
4) 정수기 수입판매업자				
법 제44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 제2호	150	230	300